

4. 不動產登記特別措置法에 의한 過怠料 賦課·徵收規則

內務部令 祭519號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의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 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

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조(부과기준 및 감경) ①시장 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 4 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시장 등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조(처분예고) ①시장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결과 등기신청해태의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 등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부과등) ①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

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2. 목적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등기신청사항
4. 위반사항
5. 과태료금액
6. 납부기한
7. 납부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제 8 조(이의신청)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 9 조(납부독촉) 시장 등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시장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조례에의 위임)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 표] 과태료부과기준(제3조 제1항 관련)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2월 이상 4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
4월 이상 6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80
6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0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0

※ 비고: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의 등록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

제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귀하께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목적부동산 의 표시	② 소재지	③ 건물구조	④ 지 목
⑤ 면 적	⑥ 위반사항		
⑦ 반대급부이행완료일 (계약효력발생일)			⑧ 등 기 신 청 일
⑨ 해 태 기 간			⑩ 과태료금액
⑪ 산출기초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 을 받게 됩니다.			
첨부: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 ○ 시 장 (군수·구청장)			

납입고지서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원정
금액	금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	○○은행 ○○지점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90mm × 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1)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원정
금액	금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은행 ○○지점	①
	○○시(군·구)	정수관 귀하

90mm × 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2)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원정
금액	금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일부인	○○은행 ○○지점	①
	○○시(군·구)	정수관 귀하

90mm × 160mm
(신문용지 54g/m²)

영수필통지서(1)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원정
금액	금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입일부인	○○은행 ○○지점	①

90mm × 160mm
(신문용지 54g/m²)

360mm × 160mm
(신문용지 54g/m²)

(앞 면)

우 표		
주 소		
성 명		귀 하

(뒷 면)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①독촉번호	②제 호 ③납기		
④납 부 의 무 자	⑤주 소		
	⑥성 명		
⑦목적부동 산의표시	⑧소 재 지		
	⑨지 목 (건물구조)	⑩ 면적	
⑪ 과태료금액			
<p>위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 (군수·구청장) ㉞</p>			

21226-12911일
'90.12.20 승인

110mm×160mm
(신문용지 54g/m²)

- 참고 1.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이 할 것.
2.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 교부송달하여도 무방함.

◀ 제정이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1990. 8. 1. 법률 제424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부동산등기신청기간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조).

나. 과태료는 해태기간에 따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0까지를 이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 제1항).

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라.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시에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함(제6조).

마. 과태료부과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함으로써 행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부터 20일간으로 함(제6조 및 제7조).

바.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의신청서식을 정함(제8조).

〈내무부 제공〉